

목 차

카지노 영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과업 내용서

2022. 07.

제1장 총 칙	1
① 과업의 개요	
②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③ 업무보고 및 회의	
④ 과업의 일반사항	
⑤ 적용기준 및 시방서	
⑥ 보안 및 비밀유지	
제2장 일반지침	15
① 공통사항	
② 조사 및 자료수집	
③ 단계별 설계관련	
제3장 기술지침	26
① 공통지침	
② 분야별 설계지침	
③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제4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4
① 일반사항	
② 성과품의 작성	
③ 성과품의 납품	
【 부 록 】 각종서식	54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카지노 영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배경

- 국내 카지노 영업장 평균 면적의 약 60%수준으로 혼잡도 가중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및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시설로서 영업 환경개선 필요.

나.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영업장 면적확장 허가에 따라 해당 영업장 면적 확대 등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카지노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의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효과

- 카지노 고객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국가 방역 시스템을 준수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영업 환경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 주 용 도 : 숙박시설(관광호텔, 위탁시설)
- 지역지구 : 계획 관리 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 대지면적 : 272,888㎡
- 연 면 적 : 161,527.73㎡(공사면적 : 5,593㎡_리모델링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공사비 : ₩21,878,697,522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기간 및 범위

가.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공휴일 포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일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동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의 범위

○ 설계범위 : 계획, 중간, 실시설계(건축, 구조, 인테리어_조명디자인, 가구류 디자인, Signage 디자인, VMD, 색채디자인, 컨셉디자인 등), 기계, 전기, 정보통신, 전화설비, 방송설비, 소방 등)업무 전 분야의 설계지침 및 관련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 용역범위 : 본 과업은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본 과업내용서, 관련규정 등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등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계약심사·일상감사·건축협의(의제 포함)·각종 심의·인증 등 필요한 도면 및 서류작성(각종보고 및 업무대행 포함), 발주기관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 및 요구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 (1) 설계도서 등 작성(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 (2)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의제 포함) 및 준공 등 대행업무(각종인증 포함)
※ 건축협의(관련서류 포함) 및 각종 인허가(의제포함) 신청서(관련도서 포함) 작성·제출 등
- (3) 각종 심의 및 용역에 관한 자료작성 및 보고
- (4) 관련법령 등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및 의견서 작성, 최종결과에 대한 설계반영 등
- (5)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설비 계획 반영
- (6) 장애인 및 고객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계획 반영(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7) 기타 관련법에 의한 예비인증(해당시)
- (8) 각종 시험 보고서 작성
- (9)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관련서류 등의 일체 작성(건축구조기술사 직인 必)
- (10) 디자인 자문 이행
- (11) 각종도서 작성
- (12) 공정표 작성(관련법령에 의거)
- (13)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장비, 배관 등)
- (14) 상기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 기타(설계관련)업무

- (1)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업무 : 설계(공사비 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 (2) 「건축법」에 의한 착공·사용승인(준공·관련서류 및 도면포함)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업무, 기타 관련법에 따른 준공(관련 서류 및 도면포함) 업무, FMS관련 업무 등.

5. 발주기관 및 연락처

- 가. 주식회사 강원랜드 시설관리실 시설운영팀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 다. TEL : (033) 590-5734
- 라. FAX : (033) 590-5620

2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착수계
- 나. 책임 기술자 선임계(자격증사본,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다. 설계용역수행 조직표(구성사) 및 각 공종(건축, 구조,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자격수첩사본, 업무내용, 경력증명서 등 첨부) 투입 계획
- 라.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 마. 계약금액에 대한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바. 보안대책 및 각서(참여기술자 포함)
- 사. 하도급 예정현황

아. 본 과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 신청서(해당 작업 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보완 요구 시 지시에 응한다.

자.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계획설계 제출 시

- 가. 설계검사원
- 나. 계획설계도서(디자인 컨셉 제안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도서) 및 설계 설명서
- 다. 관련법규 검토서
- 라.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마.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내용 납품목록 참조)
※ 적정계획 설계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안)을 요구할 수 있음

3. 중간설계 제출 시

- 가. 설계검사원
- 나. 중간설계보고서 및 설계 설명서
- 다. 중간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도서)
-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내용 납품목록 참조)

4. 실시설계 제출 시

- 가. 설계검사원
- 나. 종합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 다.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도서)
- 라. 공사예정공정표(공기 산출근거 포함)
- 마. 인·허가 및 관계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 일체
- 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내용 납품목록 참조)

5. 기타서류

- 가. 각종 검토 및 심의 자료
- 나. 건축인허가 및 등 각종허가·협의·심의 등 설계도서 및 서류 일체
-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
- 라. 각 단계별, 공종별 기존 도서와 결합한 설계도서
- 마.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설계도서 및 서류

③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보고

- 가. 월간공정보고(매월 말일 기준)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 3개월간 (수행결과1개월, 수행계획2개월_당초 계획대비 비교)
- 나. 주간공정보고(매주 금요일 기준)
 -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 3주간 (수행결과1주, 수행계획2주_당초 계획대비 비교)
- 다.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해당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 라. 기타보고
 -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회의 및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업무회의 및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등)를 개최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책임기술자(대표건축사)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설계 전반에 관한 사항 설명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인테리어)는 단계별 컨셉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설명

가. 일반사항

- 1) 계약상대자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4)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임하고 용역사 참석범위 등을 협의 후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주간, 월간 업무보고 시 관련내용에 대해 업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수시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및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고, 최적의 설계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주기관의 요구(회의요구 및 자료제출 등) 사항을 수행한다.

다. 업무회의(보고회) 회의록 작성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회의 및 보고회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필요시 참석자 서명)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가. 과업의 내용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되거나 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나. 과업종사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입찰참여 시 제출된 담당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 한다.
- 라. 책임기술자는 전체 과업을 총괄하여 수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 마. 책임기술자는 회의 및 보고 등 발주기관과 업무진행시 참석하여 수행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사. 과업수행 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조정 이 안 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아.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은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 자.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한다.
- 차. 과업의 내용은 제반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정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에 의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 고효율 조명기구, 신퇴성, 안전성, 장애 증설 및 유지보수 관리의 편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 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RFP(request for proposal) 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할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 파.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원활한 설계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계약상대자 및 전문 분야별 구성사의 합동사무실을 지정 장소에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행은 계약금액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용전, 용수 지급 및 냉·난방, 가설벽체 조성은 발주기관 지원)

2.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부서)과 건축협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설계와 연관된 모든 시설에 대해 실측 및 조사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설계제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카지노영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따른 관계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심의 및 건축협의(변경, 의제협의, 보완 등)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고 허가·착공·준공에 필요한 업무 등은 자체 비용부담으로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수행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각종심의 및 건축협의 내용(각종 인허가 및 의제협의 포함)을 반영 후 납품하여야 한다.

3. 설계검토 등

-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계획(평면, 동선, 환경, 설비, 색채 등)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필요 시 구성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및 기술심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나. 중간검토·기술자문위원회·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설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다. 관련법령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이행되는 설계 경제성 검토 및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해 자료 준비 및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검토 및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을 과업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보완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 가.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사용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인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디자인 구현 및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 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 나. 계약상대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시공성·경제성·적용사례·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다.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마.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의하여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를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 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 되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아. 공사내역서 작성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처리기준」에 따라 관급자재 1회 납품요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설계 전 유사제품과의 종합비교 검토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5.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신기술, 신공법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업 진행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

게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7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다.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부담(배상)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및 준공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을 적극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 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도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용역 수행조직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9. 각 분야별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제출 시 필요 건축, 구조,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등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괄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계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규정·훈령·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11. 관계기술자 협력

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등에 따라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시 국내·외 카지노영업장 총괄 디자인 경험과 과업수행 역량을 갖춘 국내·외 인테리어 설계사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고 최초 컨셉 및 디자인 방향이 유지되도록 용역완료시까지 자문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간, 실시설계 시 국내·외 카지노영업장 또는 5성급 관광숙박시설의 풍부한 설계 경험과 과업수행 역량을 갖춘 국내·외 인테리어 설계사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해외사의 경우 과업수행을 위해 국내법규, 관련계획, 각종 현황자료, 국내 사례분석 등의 자료제공 등 국내 실정과의 적합성 여부 검토 및 전문 분야별 설계조정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문 분야별 과업수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 계획, 법률검토, 관계분야 협의 등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자료준비, 통역, 번역 등)에 대해 일체 부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전문 분야별 책임자를 선임하여 회의 및 보고 시 책임기술자와 같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 등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아. 전문 분야별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 하고 선임한 책임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관계전문기술자는 협력사항에 대하여 서면 날인하여야 한다.

12. 감독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3. 과업의 변경

-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나. 확정설계공사비 산출 후 당초 추정공사비에 의거 산출한 설계용역비가 감소할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정산한다.
-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라.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기술용역의 이행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4. 기타

-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를 용역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부가사항은 보완하여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건축허가(협의)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마.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민원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한다.

- 바.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 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 시 설계 및 시방서 등에 일반 자재로 명기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서는 안된다.
- 아. 카지노영업장 출입 및 보안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하며 설계 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
- 자. 현황조사 시 기존 누수 및 구조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용역수행 간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차. 설계대가 지급은 용역수행 단계별 완료시 업무 효율 등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선급금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 카. 본 과업지시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과업지시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⑤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구조,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최신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등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3.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사용방법·제작기준·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설치방법·시험방법·시공방법·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⑥ 보안 및 비밀 유지

1. 보안법규의 준수 및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 하며, 이를 불이행하거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책임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제2장 일반지침

Ⅰ 공통사항

1. 적용요령

- 가.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구체화시킨다.
- 나.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 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라.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 마.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 시킨다.
- 바.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특정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 아.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의 업무 등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 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 4)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5)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 7)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건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 8)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구조·인테리어·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설계서의 하자, 미비, 불일치, 누락, 보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모든 손해비용을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정계획

- 1)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 2)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 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하도급의 범위

- 1) 각종 조사·진단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2)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 3) 관련법령 및 전문인력 등에 의하여 전문설계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 선정한다.
 -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제13조제3항). 이를 어기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 7)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현장답사 시에는 반드시 공간의 현황 및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설비 및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국내·외 벤치마킹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유사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해야 한다.
- 나.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및 발주기관이 각자 부담한다.

3. 지장물 조사

- 가. 계획 공간 내 각종 시설물 및 구조물 형태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나. 조사된 시설물은 시설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소음·진동 대책

- 가. 현재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 후 소음·진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
- 나.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설계 및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 시방서에 반영.
- 다. 공사현장 가설벽체 설계에 필히 반영

③ 단계별 설계관련

1. 계획설계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자료 수집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계획설계)을 수행한다.

가. 용역내용

- 1) 계약상대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추정 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 시 계약상대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일정의 연장은 없다.
- 4)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설명서[시장조사, 환경조사, 현황조사(설비, 지장물 등 포함) 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등]
 - (2)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및 특화 설계 제안
 - (3) 과업범위 내 동선계획, 진·출입동선
 - (4) 디자인 컨셉 및 스토리 텔링
 - (5) 공간 계획
 - (6) 설비 계획
 - (7)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 공간과의 연계 계획
 - (8)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9) 투시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 (1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청 요구사항(기존 유사사례 조사 분석자료 등)

나.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1) 서류조사

- (1)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2) 관련된 건축,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존 설계도서를 누락

없이 확보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 (1) 시설 현황 및 실측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조사 사진 대지를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2)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공간의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3)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객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4)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방법, 전기, 통신, 냉·난방 등의 기존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5) 구조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장비 반입 등에 대한 동선 등을 조사한다.

다. 시장환경조사

- (1) 경쟁사 및 유사 업종의 최근 시장 동향 및 영업 환경 등을 조사한다.
- (2) 최근 개장 카지노 및 식음 영업장 등을 사전조사 및 벤치마킹 등을 실시한다.
- (3) 디자인 트렌드 및 카지노 영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컨셉 등을 조사한다.

라. 컨셉 구상 및 디자인

- (1) 차별화된 컨셉으로 카지노 전체 영업장에 적용가능한 기획안 수립
- (2) 지속가능하고 카지노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수립

2. 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용역내용

- (1) 계약상대자는 사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조, 설비 시스템과 공간배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나. 설계(안) 세부화

계획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재확인하고 반영하여 계획설계안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 1) 공간규모
- 2) 평면 및 입면, 단면 계획
- 3) 세부 디자인 계획
- 4) 동선계획
- 5) 안전계획
- 6) 흡음대책
- 7) 배수계획
- 8) 구조보강 형식 및 공법
- 9) 구조계산
- 10) 에스컬레이터 설계
- 11) 시공계획
- 12) 유지관리계획
- 13) 시설물 현황
- 14) 민원 유발사항 검토

다. 비교 및 검토

- 1) 성능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 (1) 내장재의 내식성, 내구성 검토
 - (2) 칸막이벽의 가변형 벽체 사용의 적정성 검토
 - (3) 바닥재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 2) 설계이념·의장 및 구조형식 등의 검토
- 3)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 4)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 5) 시방, 구조방식, 설비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6) 유지관리상의 검토
- 7)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라. 종합화

- 1)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 2) 공간구성 계획의 책정
- 3)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 4) 동선 계획의 책정
- 5) 방재 계획의 책정

- 6) 시설 배치계획의 책정
- 7)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 8) 구조계획의 책정
- 9) 내외 환경(조명·소음·방진·공조 등) 계획의 책정
- 10) 각종 설비(전기·급배수·위생·소화·공조·환기·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 11)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에 따른 비율 의무 적용)
- 12)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 13)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마. 기 타

- 1)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 2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3)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 4)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변경의 처리사항
- 5) 시설물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 6)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 7)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8)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변경의 처리
- 9) 설계경제성검토(VE)

3.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용역내용

-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 2) 시공에 적용함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세부 DETAIL 도서 및 자료를 제시한다.
-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사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 난이도 및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5)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 7) 비상사태 발생 대비 피난 시뮬레이션에 의한 피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8)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 (1) 화기 및 고소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 (2)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 (3) 가설 및 보강을 통한 안전대책
 - (4)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나. 정보 수집 및 준비

- 1)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 2)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 3)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 4)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 5)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 6)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 7) 일정표 조정
- 8)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

다. 조건 설정

- 1)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1)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2)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3)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4)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2) 공사비의 파악
- 3)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 4)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 5)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라. 비교·검토

- 1) 각 부분 기능의 검토
- 2)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재료의 검토 등)
- 3) 공사비의 검토
- 4) 시공 기술의 검토
- 5)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 6)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 7)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 8)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마. 종합화

- 1) 내·외부 공간 설계
- 2)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 3)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 4) 방재 설계
- 5) 색채 계획의 책정
- 6)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 7)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 8) 각종 설비의 설계
- 9) 사용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 10)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 11) 각종 설계 등의 조정
- 12) 각종 계산서, 견적서 등 제출

바. 기 타

- 1)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 2)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3)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 4)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변경의 처리

사.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할 사항은,

- 1) 시설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 4)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 5) 기존 공급 시설
- 6) 기타

아.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 및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도서에 대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한다.

-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차.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인테리어·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중 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카. 공사비 산출

-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업무 수행 절차

-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제3장 기술지침

1 공통지침

본 과업내용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본 개념

가. 기본 방향

- 1) 인테리어는 독창적이며 특색 있고 예술성, 조형성 및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설계되어야 한다.
-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3)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 디자인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영업장 운영 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구역과 이용공간과의 격리 등 철저한 공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객, 직원, 운영자 등 시설 사용자의 쾌적

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공사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여러 인위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동시에 구조, 소방, 수해방지, 보안, 전기안전 등에 관계된 기술적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6) 기존 건축물의 기존 시설 및 특성 등의 현황자료와 시설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7) 리모델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진행시 추가적인 구조보강, 철거에 따른 파손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 8) 유사사례의 조사를 통해 수용인원, 실의 기능, 장비배치, 설비조건, 층고 등의 성능수준을 고려하고, 주요 실 이외에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부속공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 9)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차원의 환기설비 등을 고려하여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 10) 카지노 영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긴급대피 및 응급상황 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 공간계획

- 1) 기후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 및 Detail을 적용하고 하자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제시한다.

2. 기타 지침

가. 방재/방법 기준

- 1)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 국내 소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설계지침

1. 건축분야

가. 일반사항

- 1) 현장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규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2)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내구성·안정성(불연성, 내연성)·기능성·시공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건축계획 전반에 걸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계획하고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폭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4)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 5) 현지여건 건축환경(시공성, 자재수급,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 6) 건물의 용도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적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규모·공간·입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이용에 편리하게 반영한다.
- 7) 공간 및 시설물은 선도적 디자인으로 조화롭게 구현하고 계획한다.
- 8) 공간의 배치, 자재의 선정 등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친환경 에너지 및 고효율기기(LED 등)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 9) 문 손끼임 방지, 모서리 및 각진 부분의 안전장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마감재 선정 등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 10) LCC(Life Cycle Cost)분석 등을 통해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계획한다.
- 11) 시설규모 기준(안)을 참고 설계를 진행한다.

나. 평면계획

- 1)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 2) 각 시설별 독립공간과 공유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유기적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3) 시설 운영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실의 용도변화 및 증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4)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고 장비반입을 고려한 적정개구부 폭 확보로 시공효율 및 준공 후 유지보수 효율을 고려한다.
- 5) 적정 동선 코어계획을 계획하여 공용면적을 최소화 한다.
- 6) 각 실의 배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계획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입면계획

- 1) 모듈을 고려한 입면계획으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계획한다.
- 2) 디자인과 마감 재료는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3) 창호는 미관, 소음차단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하고, 실별 천장 높이는 업무 특성, 공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를 선정하도록 한다.

라. 단면계획

- 1) 각 공간의 용도에 맞고 쾌적한 환경(환경·일조) 및 친환경적인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밝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게 계획한다.

마. 동선계획

- 1) 화재 등 재해 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동선 및 원활한 소방동선을 계획한다.
- 2) 이용자 특성별 동선을 구분하여 쾌적한 배치계획을 하고 사고발생 시의 피난(방화, 보안)에 효율적인 동선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3) 동선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부대시설

- 1)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및 각 실 사이 및 외부공간 턱을 최소화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공간으로 계획한다.
- 2)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게 표지체계(Signage) 및 실내 각실 안내표지판 및 내부 팀별 표지판 등을 계획한다.
-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접합한 내부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실별안내 접자판 등)

2. 구조분야

가. 기본사항

-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4) 구조설계는 관계법령 및 건축구조기준(대한건축학회)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 1)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적용기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2) 적용기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다. 구조계획

- 1)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2)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3)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4)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라. 구조설계

- 1) 관련법 및 규정 등에 적합하게 구조설계하고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 3) 설계하중
 - (1) 경량 칸막이벽은 위치변경을 예상하여 그 위치가 어디로 변경되더라도 구조상 안전하도록 하중계상을 한다.

(2) 고하중 장비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반영한 구조로 한다.

마.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 1)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 구성과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 2) 구조계산서 작성 [일반사항, 구조개요,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구조설계기준(System),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부재단면 요약, 구조 골조 평면 및 주 단면도, 설계하중 산정, 구조해석, 부재설계,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내진·내풍설계 검토 등]

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관련 건축물 (내진) 설계도서 Checklist 및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3. 인테리어분야

가. 기본사항

- 1) 인테리어 계획은 카지노 영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격, 효율성, 상징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기초로 수행하며 설계도서 및 주요부위 투시도 작성 등이 포함된다.
- 2) 각 단계별 인테리어 계획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를 진행한다.
- 3) 디자인 컨셉 및 계획설계는 국내·외 카지노 영업장 디자인 경험과 역량이 충분한 검증된 전문가가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4)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단위별 공사계획과 작업여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5) 가구, 커튼, 사인물, 예술장식품, 제작조명은 예정원가작성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제출한다.
- 6) 전체 설계과업 범위 내에 설치되는 가구, 커튼, 사인물, 조명 등에 대한 계획과 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사양서) 작성이 과업에 포함된다.
- 7) 주요 실내 마감재의 선정 제안서(3안 이상 포함) 및 Sample Board를 작성 제출한다.
- 8) 분야별 Design 전문가와 협업하여 합리적이며 차별화된 Design을 계획하여야 하며 VMD, FF&E, OUT-LET 등 공간적, 시각적 총괄 Design 과업을 포함한다.

- 9) 영업장 마감은 유지관리 용이 및 에너지 절약 등이 반영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10) 기존 영업장 등의 시설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11) 인테리어 설계부위는 실내투시도를 작성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단계별 설계진행에 따라 실내투시도 성과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12) 모든 마감재는 사양(Color 선정 포함)이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Spec' Book에 명시하여야 하고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3) 인테리어 조명디자인 전문가에 의해 조명설계가 되어야하며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온도, 조명기구, 조명연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조명디자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4) 전기 사용이 요구 될 경우 인접 분전함 이용까지 설계에 반영한다.
- 15)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디자인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디자인의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나. 설계지침

- 1) Design Concept은 Trend 및 사례,시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2) 모든 근거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이어야 한다.
- 3) Design Concept 방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업무를 진행한다.
- 4) Carpet Design은 Grapic제안 및 시식을 통한 Sample 제출을 포함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Sample 3회, Carpet 실적용 사양)
- 5) 계획되어지는 모든 자재는 변색 및 오염 등의 하자요인이 없어야 한다.
- 6) 마감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SAMPLE 제시 및 적용사례 등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업계 최고의 Design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화 디자인 및 기획안을 적극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 8) Design 단계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은 없다.

- 9) 투시도는 3D Max Program 등으로 작성하며 View Point는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 10) 고객시선에 노출되는 모든 Out-Let류 및 각종 설비 기구류는 Design과 부합하도록 통합 관리한다.
- 11) Hardware 및 위생기구류와 악세사리 등은 기능성과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마감재질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각 실별, 공간별 상세 스케줄을 작성하여 누락 품목이 없이 관리 되도록 해야 한다.
- 12) Built in Furniture & Loose Furniture의 디자인 및 설계도서는 가구설계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공장제작 및 현장 설치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13) Detail Drawing은 시공에 있어 모든 부분의 기준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하자발생 방지 및 디자인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만족하고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14) Furniture & Detail Drawing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다. 단계별 설계 지침

1) 계획 설계

- (1) 주변 환경 분석 및 기존시설의 여건조사
- (2) 시설 배치 계획안
- (3) 개략공사비 산출(마감별 2안 이상)
- (4) 사례 및 시장조사
- (5) 최신 트렌드 분석
- (6) 공간 기획 및 디자인 컨셉 구상
- (7) 평면 기획 및 주요 입면 제시
- (8)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부 투시도
-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중간 설계

- (1) 총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천장도, 입면도, 단면도 등
- (2) 상세도면 : 바닥, 벽, 천정, 창호 등의 표준 및 마감상세도 및 실내재료 마감표

(3) 검토서

- 가) 면적 및 치수표 : 용도별 면적, 각 실별 면적, 각 부위별 기준 치수 산출 근거
- 나) 성능검토 : 채광, 음향, 내화구조, 마감재, 시스템, 기능성검토 등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실시 설계

실시설계도서 : 건적, 발주,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 표현 총괄도면

- (1) 총괄도면 : 계획, 중간설계 도면의 내용 최종 보완
- (2) 확대도면 : 내부 공간, 수직 동선 등의 평면, 입면, 단면도
주요 공간의 내부 전개도 및 천정, 평면도
- (3) 상세도면 : 마감, 창호, 부품 및 기타 제반 상세, 특수 상세 등.
- (4) 계산서 : 실시설계도면 작성의 근거가 되는 제반 계산.
- (5) 시방서 : 주요 자재의 재질 특수공법에 관한 기술
- (6) 내역서 : 물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 일위대가. 근거자료 등.
- (7) 마감재료 계획서 : 재료계획서, 각종 Sample Board 등.

4. 기계설비 분야

가. 용역범위

- 1) 열원설비
- 2) 공조 설비(냉방, 난방, 환기 및 폐열회수), EHP
- 3)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 4) 자동제어설비(기존시스템 연계)
- 5) 가스설비
- 6) 방음 및 방진설비
- 7) 직접구매(관급) 자재 발주자료(내역, 시방서, 산출근거 등)
- 8) 시설물 사용에 따라 필요한 설비(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의 연계 고려

나. 관련법규 적용

-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 3)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4) 산업표준화법
 - 5)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6) 위험물안전관리법
 - 7) 환경보전법
 -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9) 수도법, 하수도법
 -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 1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 13)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 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상기 관련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 설계기준(에너지절약, 열원기기, 공기조화기 등)과 표준시방서 본 공사와 공기업에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다. 설계지침

- 1) 일반사항
 - (1) 설계 기준은 정부의 관계 법규와 제반 규정 및 국토부의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 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기계설비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및 쾌적한 환경과 빌딩관리의 효율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 (3) 기계 설비 분야의 설계는 관계법에 의거 건축, 인테리어, 전기 등의 설계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기계설비의 경제성, 시공성, 기능 및 유지관리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설계도서 및 각종 자료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데이터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5) 설계도서의 내용, 계통 및 중요사항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관련법규의 충족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6) 설계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 (공조, 위생, 환기, 신재생에너지, 자동제어, 가스 등)의 최근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포함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 (7) 기존 설비[급수(시수, 정수), 급탕, 오·배수, 공조, 자동제어, 가스설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용범위와 철거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8) 기존설비 연계 및 신규장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 중앙감시실에서 통합관제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9) 급수배관 및 공조배관의 모든 분기점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일정구역의 누수, 누기로 인한 보수 시 전 구역의 차단을 방지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10) 배관은 절연, 소음절감 방안, 내진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해서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한다.
- (11) 외기에 의한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동파방지 및 상대감시가 가능해야 하고 결로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12) 건물의 운영방식에 따라 용도별 가스, 급수, 급탕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13) 설비의 신설, 증설, 대체 등은 기존도면 검토와 현장 수시 사전답사를 통해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하고, 배관·배기설비 등을 분석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14) 기존 활용 가능한 설비와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기존장비 및 설비와 연계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면교체, 개보수, 기존설비 재사용 등 우선순위를 정하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추가공사 시 여건(소요비용, 설치공간 등)을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15) 각종 설비 등 주요장비의 기기용량, 규격, 특성 등이 기록된 장비선정기준 및 부하용량 계산서를 별도 작한다.
- (16) 모든 설비는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장애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17) 기계설비는 고효율 기자재 사용 및 운영,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 (18) 설비관련 리모델링 전과 후를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 (19) 설계에 적용한 주요장비와 부품의 Spec Book을 실시설계 납품 시 제출한다.

(20) 에너지 사용설비(EHP 등)는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크가 가능한 현장제어 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각 설비별 제어시스템은 개방형 통신 기술을 권장한다.

2) 냉·난방 공기조화(자동제어)설비

- (1) 건물의 평면, 단면, 용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닝(Zoning)을 설정하고, 당 부위에 대한 실제 부하량을 계산하여 기존 공조기의 부하량 분배와 주방공조기의 대체, 필요시 추가 신설설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2) 냉·난방 공조 설비는 시뮬레이션(CFD분석 보고서)을 통한 각 구역의 기능에 따라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을 계획하여야 한다.
- (3) 추가 공조기는 기존설비와 통합 관제가 가능해야하며 각 조닝에 대한 풍량, 풍속 등을 표기한 용량 보고서를 제출한다.
- (4)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를 계획하고 실내공기 청정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신규 공조기 Air Filter는 자동세정방식과 기존 공조기의 관리방식을 참고하고, Filter 관리공간과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리스 주입장치 및 동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Cooling Coil 하부 응결수가 집결되는 곳은 STS 재질로 제작한다.
- (6) 공조기에 내장되는 가습기는 기존 공급방법과 설치형태를 참고하여 동일한 제어가 가능해야하며 열원 및 실내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겨울철 가습량의 조절이 용이한 것으로 선정한다.
- (7) 덕트는 설계 풍량이 통과함에 있어 유체속도와 마찰저항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고 관벽 마찰저항과 댐퍼 등의 부하 손실량을 정확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8) 급·배기 루버의 방충스크린은 탈착이 가능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류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9)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방습처리 하여 단열효과 저하 및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11)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기가 많은 곳과 주방배기는 설계기준에 따라 STS 덕트를 반영 하여야 한다.
 - (12) 주방은 단독 탈취설비 및 배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방 및 기물 창고 등의 배기 Fan은 해당 실에서 ON-OFF가 가능하도록 반영하며 중앙감시반에서 상태감시 및 조작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 (13) 환기 및 강제 배기시설은 계통별로 단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4) 배기량이 많은 공조 계통에는 배열회수를 위한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 (15)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 비용 감소가 가능한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이코노마이저, BY-PASS DUCT 등)한다.
 - (16) 신설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 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한 가변속 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형 제어방식 채택을 권장한다.
 - (17) 자동제어는 절전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엔탈피 제어, CO2제어, 공조기 온·습도제어 등 기존 장비 제어기능을 유지해야하고 신규장비에 적용한다.
 - (18)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
- ## 3)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 (1) 위생설비 급수, 급탕, 오·배수 등의 부하를 반영하여 기존 공급배관의 확대, 철거, 신규설치 등 합리적인 방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 (2) 급수방식은 기존 부스터펌프 배관라인을 연장 또는 신설하고 용량이 부족할 경우 설비를 증설한다.
 - (3) 급탕설비는 온수의 압력변화가 없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 (4)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기구별 최소 사용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5) 가스시설의 철거 및 추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인·허가관련

수수료 등 관련법규에 맞게 설계에 반영한다.

4) 방음·방진설비

기계·기구·배관 및 그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진동·전도·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도서

설계설명서(설계개요, 계통구성, 단일품목 채택사유, 주요시공계획), 설계계산서(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기기류 부하계산 및 장비 선정사유)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는 평면도에 명시할 수 없는 부분(표시 및 식별곤란)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도 설치 및 부분 상세도면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 분야

가. 설계용역범위

1) 전력설비

- (1) 전력간선설비
- (2) 분전반 설비
- (3) 동력설비
- (4) 무정전 전원설비(UPS)
- (5) 조명설비(설계 조도는 각 용도별 표준 조도 KSA 3011의 기준 이상으로 하며, 전체조명 수량의 100%를 LED조명으로 설계한다.단 인테리어 및 특수조명은 제외 할 수 있다.)
- (6) 전열설비
- (7) 신재생에너지 설비(필요시)
- (8)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 (9) 접지설비
- (10) 흡통 히팅, 아이스 스톱, 출입구 스노멜팅, 동파방지 등
- (11) 승강설비
- (12) 전광판 설비(아트월 등)
- (13) 기타 본 공사 목적상 필요로 하는 설비

나. 관련법규적용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건축법, 주차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행정부처의 각종 고시 및 기타 본 공사에 요구되는 관련법규

다. 설계지침

- 1) 기존 전기/통신/소방 설비계통의 각종 설비와 시스템을 조사 검토하여 기존의 각종 설비와 본 공사의 모든 설비는 기존의 설비와 일원화된 관리 및 효율성이 제고된 설계를 한다. 아울러 상기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의 각종 설비의 이설, 증설, 개, 보수 등의 보완 사항도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2) 모든 설계는 본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신뢰성, 기능성, 보수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며,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최상의 시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3) 설계도서 및 각종 자료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DATA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4) 설계도서의 내용, 계통 및 중요사항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관계법규의 충족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5) 전력계획은 기존설비를 확인하여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에너지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6) EPS 및 TPS를 기존설비를 확인하여 간선 및 기기설치 공간을 계획하고 전선의 인출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기존 panel의 계속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7)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계획하여야 한다.
- 8) 신재생에너지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계획하여야 한다.
- 9) 접지 및 피뢰설비를 확인하여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계획한다.
- 10) 주요통신시설(통신실, POS설비, 발권데스크등)에 예비전원(UPS)을 계획 하여야 한다.
- 11)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영상장비, 전산장비, 영업장비 등)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 12) 약세스 플로어 하단의 배선은 반드시 Cable Duct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와 통신케이블을 구분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 13) 기존 접지설비를 확인하여 통신관련 접지계통은 강전설비의 영향 최소화

화로 통신품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전원용 분전반 및 옥외 케이블 등 입출력은 SPD를 설치 검토한다.)

- 14) 기타 신고 및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5) 전기, 통신, 소방의 관련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여 각종 검사의 대상범위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 설계는 매 단계마다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7) 전기설비 실시설계 지침에 누락된 내용 또는 실시설계 조사 중 발견된 사항은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하며 협의 후 반영한다.

6. 정보통신 분야

가. 설계용역범위

1) 정보통신설비(호텔&카지노와 연계)

- (1) 전화설비(IPT)
- (2) CATV 설비
- (3) O/A용 설비
- (4) LAN 설비
- (5) DID 설비(키오스크 등)
- (6) 출입통제설비 및 근태관리 시스템
- (7) 전관 방송설비(리모트 앰프 포함)
- (8) CCTV 설비
- (9) 기타 본 공사 목적상 필요로 하는 설비

나. 관련법규적용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법, 주차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행정부처의 각종 고시 및 기타 본 공사에 요구되는 관련법규

다. 설계지침

- 1) 기존 전기/통신/소방 설비시스템의 각종 설비와 시스템을 조사 검토하여 기존의 각종 설비와 본 공사의 모든 설비는 기존의 설비와 일원화된 관리 및 효율성이 제고된 설계를 한다. 아울러 상기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의 각종 설비의 이설, 증설, 개, 보수 등의 보완 사항도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2) 모든 설계는 본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신뢰성, 기능성, 보수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며,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최상의 시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3) 설계도서 및 각종 자료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DATA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4) 설계도서의 내용, 계통 및 중요사항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관계법규의 충족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5) EPS 및 TPS를 기존설비를 확인하여 간선 및 기기설치 공간을 계획하고 전선의 인출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기존panel의 계속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6)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계획하여야 한다.
- 7) 접지 및 피뢰설비를 확인하여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계획한다.
- 8) 주요통신시설(통신실, POS설비, 발권데스크 등)에 예비전원(UPS)을 계획 하여야 한다.
- 9)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영상장비, 전산장비, 영업장비 등)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 10) 전화 및 LAN구축은 회사의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 11) 액세스 플로어 하단의 배선은 반드시 Cable Duct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와 통신케이블을 구분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 12) TPS실과 OUTLET모듈과의 UTP케이블 길이가 80M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3) 기존 접지설비를 확인하여 통신관련 접지계통은 강전설비의 영향 최소화로 통신품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전원용 분전반 및 옥외 케이블 등 입출력은 SPD를 설치 검토한다.)
- 14) 기타 신고 및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5) 전기, 통신, 소방의 관련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여 각종 검사의 대상 범위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 설계는 매 단계마다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7) 통신설비 실시설계 지침에 누락된 내용 또는 실시설계 조사 중 발견된 사항은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하며 협의 후 반영한다.

7. 소방설비 분야

가. 소화설비

- 1) 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 설비와 연계하여 헤드 종류 및 간격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한다. 벨브, 배관 등 재 사용이 어려워 신규 설치가 필요할 경우 더블인터록 등 누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검토하여 설계한다.
- 2) 펌프의 양정, 소화용수 등이 부족하여 신규설치 할 때,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한다.
- 3)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함은 돌출되지 않은 매입형으로 설치하며, 옥내소화전함 안에는 호스걸이를 설치한다.
- 4) 소화기는 가스계 소화기(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로 설치하며, 수량 및 위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5) 기존 영업중인 공간에는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화재 시 자동소화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나. 경보설비

- 1) 기존 방재실의 설치된 수신기와 연동되도록 한다.
- 2) 감지기는 오동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며, 유지 보수등 관리에 용이한 감지기를 적용한다. 이때,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한다.
- 3) 기존 영업중인 공간에는 정상적으로 화재가 감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4) 화재 시 청각장애인이 시각적으로 인지하여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장치를 반영한다.

다. 피난설비

- 1) 비상구 유도등은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 2)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피난동선을 구성한다.
- 3) 유도등의 종류는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서 제시한 설치장소별 중

류에 준하여 설치한다.

라. 소화활동설비 및 기타

- 1) 제연구역 변경 등에 따라 제연설비 적정성(T.A.B 등)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한다.
- 2)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셔터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 3) 내진설계 필요시 관련법령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4) 방화셔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폐쇄 작동 시에 소리나 빛으로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공통

- 1)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등 소방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소방설비는 전기/통신/소방 설비계통의 각종 설비와 시스템을 조사 검토하여 기존의 각종 설비와 본 공사의 모든 설비는 일원화된 관리 및 효율성이 제고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기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의 각종 설비의 이설, 증성, 개·보수 등의 보완 사항도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3)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 4) 소방감리비, 프로그램 수정 비용을 포함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③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구조, 인테리어,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건축+구조, 인테리어,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제4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 가.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에 따라 설계 도서작성의 구분 “상급”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제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
-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기타

-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 나. 품질관리가 필요할 경우 품질관리비를 별도 계상한다.
- 다.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라.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공사 진출입 동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마. 현황조사 및 실측을 바탕으로 한 기존 전체 설계도서(호텔·카지노 지구)에 신규 설계된 전체 사업이 표현된 설계도서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 가.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 나.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한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등을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 다.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 가.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 나. 건축 및 구조분야 : 기본계획, 구조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의 결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이용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등
- 다. 인테리어분야 : 디자인 컨셉 및 차별화 전략과 마감재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 유지관리 및 세부 공정계획과 공사비, 평면·입면·주요 단면작성 등.
- 라.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 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 마.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 바.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사. 소방분야 : 소방설비, 자탐설비 등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2. 각종계산서

- 가.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 나. 구조계산서(건축), 수리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전기, 기계설비, 정보통신, 신재생 에너지 등), 조도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화 계산서 포함),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테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각종 장비용량계산서,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 용량 계산서, DVR 용량계산서, 주 덕트 계산서, 환경계산서(위생·오배수·가스배관),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연설비용량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 다. 공사비산출서〔원가계산서, 내역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가격조사자료 등〕

3. 설계도면

- 가.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 바.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또는 USB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 PDF파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4. 공사 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

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5. 공사 내역서

- 가.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공사비 내역서는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 1) 재료비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가격)으로 한다.
 - (2)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3)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직접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다. 공사비(건축·인테리어·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등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라.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시 별도 작성) 등을 포함하여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마.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 바.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 사.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 아.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자.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카.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부위별로 작성 집계하고,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2)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 3) 재무회계예규
- 4)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예정공정표 작성

가. 예정공정표는 PERT -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 한다.

나.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공기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7. 시설현황 조서 및 인·허가 도서

가. 최초 과업과 연계 및 영향이 있는 시설 현황 조사내용에 대해 기록 작성한다.

나. 인·허가 도서 작성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8. 기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검토협의),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제출시기 및 내용, 도면부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1) 계획설계 납품(검토협의)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2)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30일 이내(1차 설계경제성 검토)
- 3) 실시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200일 이내(2차 설계경제성 및 적정성 검토)
- 4)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30일 이내(1차 제본 제출)
- 5) 실시설계 최종 제본 납품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2.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5	부	디자인, 컨셉, 공간계획, 설계도서 등.
2	조사보고서	A4	5	부	필요시 벤치마킹 보고서 포함
3	분야별 계획서	A3	5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5	주요 마감재 계획서	A4	5	부	SAMPLE BOARD 포함
6	USB		3	EA	
7					

주) 1) 계획 설계(안)은 검토 협의 완료된 내용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2) 납품수량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조정 및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3.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 위	공 중						비 고
					건축	구조	인테 리어	기계	전기	통신	
1	중간설계보고서	A4	5	부	○	○	○	○	○	○	세부공간계획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5	부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5	시 방 서	A4	5	부	○	○	○	○	○	○	특기시방
6	마감재 보고서	A3	5	부	○	○	○	○	○	○	SAMPLE BOARD 포함
7	특화 설계 보고서	A4	5	부	○	○	○	○	○	○	
8	USB		5	SET	○	○	○	○	○	○	공종별 통합
9	투시도	A1	5	SET			○				표구 포함

주) 1) 투시도는 제출 시 별도로 A3 규격 5SET와 원본File을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시도 제작시 VIEW POINT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실사수준에 제작되어야 한다.
 3) 중간설계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4) 설계원도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전자파일 작업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6)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은 EMS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되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고,
 7) 공사에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관련 규정 적용)
 8) 폐기물처리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9) 납품수량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조정 및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심의 및 검토 등 설계도서(투시도 포함)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부수제출(납품일 별도협의)

4.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 위	공 중						비 고
					건축	구조	인테 리어	기계	전기	통신	
1	종합보고서	A4	7	부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7	부	○	○	○	○	○	○	세부공간계획
3	설계원도	A1	2	부	○	○	○	○	○	○	
4	설계도면	A2	4	부	○	○	○	○	○	○	반점
	설계도면	A3	10	부	○	○	○	○	○	○	반점
5	각종 계산서	A4	7	부	○	○	○	○	○	○	구조계산서 등
6	내역서	A4	7	부	○	○	○	○	○	○	
7	관급내역서	A4	7	부	○	○	○	○	○	○	
8	수량산출서	A4	7	부	○	○	○	○	○	○	
9	단가산출서	A4	7	부	○	○	○	○	○	○	건축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7	부	○	○	○	○	○	○	
11	일반시방서	A4	7	부	○	○	○	○	○	○	
12	특기시방서	A4	7	부	○	○	○	○	○	○	
13	관급시방서	A4	7	부	○	○	○	○	○	○	
14	공정표	A1	2	부	○	○	○	○	○	○	전 공종 포함
15	마감재 보고서	A4	7	부	○	○	○	○	○	○	
16	샘플 보드	A1	3	SET	○	○	○	○	○	○	
17	제연설비공정계산서	A4	7	부							○
18	USB		5	SET	○	○	○	○	○	○	공종별 통합
19	기술용역평가자료(CD)				○	○	○	○	○	○	해당시
2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인허가·각종 인증서류 등

주) 1)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2) 설계원도는 USB에(도면목록 및 한글폰트 포함) 저장하여 제출한다.
 3)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전자파일 작업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은 EMS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되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고,
 5) 공사에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관련 규정 적용)
 6) 폐기물처리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7)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수량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조정 및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발주처는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할 것이며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 · 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제공 등 부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랜드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공익
신고 센터

- ▶ 강원랜드 홈페이지 (<https://kangwonland.high1.com/>)
부패·공익신고센터
- ▶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붙임 1] 보안각서

보안각서

1. 용역명 : 카지노 영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2. 계약일자 : 20
3. 착수일자 : 20
4. 완료 예정일 : 20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 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 호 :	기 술 분 야 :
대 표 자 :	(인) 성 명 : (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역명 : 카지노 영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4. 착수일자 : 20
5. 완료예정일 : 20

- 가. 성명 :
- 나. 주소 :
- 다. 주민등록번호 :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하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역명 : 카지노 영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4. 착수일자 : 20
5. 완수예정일 : 20

- 가. 하도급분야 :
- 나. 하도급금액 :
- 다. 하도급자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보유면허 :

-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책임자 선임계 및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하

월간 업무 보고

- 용역명 : 카지노 영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분야별 책임자 : 건축_ 구조_ 인테리어(국내·외)_
 기계_ 전기_ 통신_ 소방_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 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건축사 (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하